

##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 (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 검용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신청인	회사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	전자우편	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	
변경내용	파생모델등록[ ], 부품변경[ ], 회사명변경[ ], 주소변경[ ], 그 밖의변경[ ]		
세부내용	(필요시 별지 사용)		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23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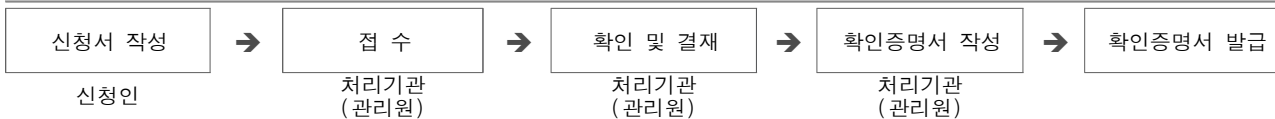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
		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

### 처리절차



### 발급번호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 변경신고 확인증명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

직인